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안]

### 제안이유

도메인이름, 인터넷프로토콜주소 등 인터넷주소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소자원의 관리와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2004년 현행 법률 제정으로 정부주도의 관리체계가 정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주도의 관리체계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축시켜 국제적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결정 과정에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주소자원의 공공성을 유지할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정부에게 부여하되, 인터넷 주소자원의 일상적인 관리와 정책 결정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민간 중심의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 기구로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상향식으로 구성된 인터넷주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터넷 주소의 일상적 관리 및 정책결정 기구로서 인터넷주소위원회를 신설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 부칙 제2조).
- 나. 기존에 정부에 부여된 기본계획의 수립, 주소자원 개발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인터넷주소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의6, 제7조, 제8조).
- 다.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인터넷주소위원회가 법인 및 단체에서 지정하게 함(안 제9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개방적인 논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터넷주소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위원회(이하 "주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의6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주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 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이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6. 기타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주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의2 부터 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주소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주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주소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주소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3(감사) ① 주소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주소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의4(사무국) ① 주소위원회의 사무 보조 등을 위하여 주소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주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의5(지원) ① 주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6(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주소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주소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 사업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소위원회는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 주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 1. 인터넷주소관리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 2. 인터넷주소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설비와 역량의 적정성

제13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주소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정책수립)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관리준칙 등 인터넷주소 관련 정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서 수립·시행되도록 정책기구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를 자신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주소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각 위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소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소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이해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설립추진단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소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 법 시행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주소위원회 설립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주소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추진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설립추진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주소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한다.

제3조(업무의 대행) 주소위원회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 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u>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국가의 책무)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국가의 책무)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u>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개방적인 논의를 거쳐서</u>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u>노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u>논의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u></p>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제6조(인터넷주소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위원회(이하 "주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의6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사항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주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④ 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이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공한 자

-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3.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
- 4.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자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 6. 기타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⑦ 주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신 설>

있다.  
⑧ 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주소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주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주소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주소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3(감사) ① 주소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주소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4(사무국) ① 주소위원회의 사무 보조 등을 위하여 주소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주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5(지원) ① 주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6(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주소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  
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  
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  
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  
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① 주소위원회는 -----  
-----  
-----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  
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  
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  
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  
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  
제협력) ①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  
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  
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  
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  
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  
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  
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  
-----  
-----  
-----

(삭제)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  
제협력) ① 주소위원회는 -----  
-----  
-----  
-----  
-----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  
정) 주소위원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 중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지정  
한다.

1. 인터넷주소관리 업무운  
영 계획의 적정성

<p>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u>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이하 생략)</p> <p>&lt;신 설&gt;</p>	<p>2. <u>인터넷주소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설비와 역량의 적정성</u></p> <p>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u>주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정책수립) <u>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관리준칙 등 인터넷주소 관련 정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수립·시행되도록 정책기구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를 자신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로 수행하여야 한다.</u></p>
<p>제26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의 제) <u>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u></p>	<p>제26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의 제) <u>주소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각 위원과</u> ----- ----- -----</p>

<p>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lt;신 설&gt;</p>	<p>----- --.</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lt;신 설&gt;</p>	<p>제2조(주소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소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소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u></p> <p>② <u>설립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이해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u></p> <p>③ <u>설립추진단은 이 법 시행전에 주소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 법 시행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u></p> <p>④ <u>설립추진단은 주소위원회 설립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주소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추</u></p>

<신 설>

진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설립추진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주소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한다.

제3조(업무의 대행) 주소위원회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 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대행한다.